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11. 27.(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4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5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55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언뜻 보니까 오타가 한 2개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 최성준 위원장

- 오타 정도입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오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55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강릉문화방송(주)과 삼척문화방송(주)의 합병에 관한 건 (2014-56-19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강릉문화방송(주)과 삼척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한다'입니다. 먼저 변경허가 조건입니다. <1>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중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지역성 유지를 위한 연주소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할 것, <3>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피합병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청자 불만처리 및 고충처리 제도 운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4>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고 사항입니다. <1> 방송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 디지털라디오 등 방송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 <3> 광고매출 감소 등에 따른 수익창출을 위한 비 방송 사업은 지상파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방송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 <4> 합병법인 및 그 최대액출자자인 (주)문화방송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 및 경영 효율성 등 실질적 경쟁력 제고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강릉문화방송(주)과 삼척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변경허가 대상사업자입니다. 변경허가 대상사업자 방송국 현황은 강릉문화방송(주)이 TV 1개국, 라디오 3개국 총 4개국이며, 삼척문화방송(주) 역시 TV 1개국, 라디오 3개국 총 4개국이 되겠습니다. 신청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강릉문화방송(주)이 삼척문화방송(주)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신청해 왔습니다. 합병 후 회사명은 '주)엠비씨강원영동'으로 변경하고, 방송구역과 연주소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강릉방송국은 보도중심, 삼척방송국은 제작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를 말씀 드리면 심사위원회는 고삼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총 1,000점 만점 중에 705.33점을 획득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구체적인 점수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강릉-삼척 MBC의 법인합병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노사합의에 근거해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변경허가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방송사업자 간 합병으로 방송국 운영,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투자계획 이행, 시사·보

도 프로그램 편성 확대계획 및 연주소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등의 이행이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수신환경 개선 노력, 방송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광고매출 감소 등에 따른 수익창출을 위한 비 방송 사업의 추진은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으로서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고 방송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건은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첫 사례인 만큼 시청자 서비스 강화, 경쟁력 제고 등 합병의 시너지 효과의 구체화 및 노사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MBC는 지역MBC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지역사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무국의 검토의견입니다. 변경허가 여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미래부의 기술 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변경 허가함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으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변경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은 의결주문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본 합병 건을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허가증을 교부하고 금년 말까지 강릉-삼척MBC로 하여금 합병을 모두 마무리하고 합병등기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심사평가 결과 및 심사의견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변경허가 조건 2호에 보면 지역성 유지를 위한 연주소 세부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잘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강릉방송국은 보도중심, 삼척방송국은 제작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성을 유지한다는 쪽으로 연주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지요? 강릉방송국에 있는 연주소는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지역성을 감안하고 이쪽 삼척 쪽은 보도 외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지역성을 감안하라는 뜻입니까? 약간 클리어(clear)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연소소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은 노사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강릉과 삼척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유지하려면 채널과 연주소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두 기능에 보도와 제작기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역 의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도 중심의 기능은 강릉 중심으로 하고 스튜디오 강화나 프로그램 제작은 삼척 중심으로 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해소하면서 2개를 유지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변경허가 신청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에게 낸 부분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강릉이든 삼척이든 보도 프로그램이든 다른 보도 프로그램 외 프로그램 제작이든 양쪽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든 지역성을 잘 고려하고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연주소를 이렇게 특화해서 구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과 그것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심사위원들이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수신환경 개선 노력, 방송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 않았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을 보니까 1호가 그 내용을 받은 것 같고, 2호가 방송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방송기술 발전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협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정책에 협조하라는 것은 꼭 기술 쪽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것은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UHD나 디지털라디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관련 정부정책'이라는 말이 방송기술과 관련된...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끝으로, 권고사항 3호에 '비 방송 사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방송사업은 방송법에 말하는 방송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강릉문화방송(주)이나 삼척문화방송(주) 그 전에 방송법에서 말하는 방송사업 외에, 콘텐츠와 관련됐다가 그것을 일종의 문화사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방송사업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 방송 사업이라는 것은 방송사업과 관련된 사업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송사업이 있고 방송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질문인데, 비 방송 사업이라는 표현이 거북해서 그러는데 방송사업 외의 사업..., 하여튼 제 궁금증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비 방송 사업이라는 것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통상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재산상황공표집을 계속 발간해 왔는데 거기에 보면 방송사들이 통상적으로 방송과 직접 관련된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소위 비 방송 사업으로 묶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바와 같이 정확한 용어는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지만 그것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비 방송 사업이라고 봤는데, 거기에는 방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방송사가 방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거기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다룬데 유통·배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적사업인 방송사업과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 뜻은 방송사업 법적 정의에서 좁게 이야기하는 방송사업 외의 방송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 방송 사업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인지….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표시한 것은 아까 본 목적사업으로서 방송사업과, 콘텐츠와 유통과 관련된 사업으로 비 방송 사업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그것 이외 예식장이나 다른 기타 사업들을 통칭해서 비 방송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권고사항 3호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장 사업을 하더라도 청사의 강당이나 회의실을 활용해서 직원들이나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여기에서 신중하게 하라는 그 비 방송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비 방송 사업 용어를 더 클리어하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는 잘 안 떠오릅니다. 방송사업 외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자어를 우리 말로 푼 것밖에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질적으로 강릉과 삼척 합병 관련해서 여기에 적시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커피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내용 중에 방송 이외에 하고자 하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네 사옥이나 부지를 활용하면서도 보통은 방송사의 영향력이나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 브랜드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 재허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거나 조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수익을 낸다는 방송사 재원 조달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또는 이런 방송사로서의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라기보다는 표현

이 비 방송 사업의 범위 개념이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합병법인의 정관의 목적 중에 사업이 쪽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여기에서 표현된 비 방송 사업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차피 다른 방송과 무관한 사업을 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아무거나 마구 할 수는 없을 터이니,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애매한 용어를 쓰지 말고 한정된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는, 또는 '등을 비롯한'이라고 해서 예시를 함으로 인해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정관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 이이용 지상파방송정책과 사무관

-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다른 말씀 하시는 동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나온 그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면 방송사가 부대사업으로 직접적인 방송이 아닌 방송 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송의 정관이든지 부대사업으로 문화사업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판이나 교육이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문화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사업 정도를 표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릉·삼척문화방송, 아마 강릉문화방송(주)이 기존에 검토했다가 통합방송사의 방송 외 사업으로 제출한 것 같은데 커피 로스팅, 이것이 문화사업이나 하는 것입니다. 출판, 예를 들면 EBS가 수능교육방송을 하면서 교재출판하는 것, 이것은 문화사업, 출판 사업, 이것은 방송 외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시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 로스팅, 또는 관광사업, 이것이 문화사업이나, 그 지역공동체, 그 지역 문화권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하는 것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확대하면 토건사업, 건설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 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파, 방송사업으로 얻은 신

퇴성과 브랜드 가치를 방송 외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영역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6페이지 보면 변경허가 조건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삼척문화방송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닙니다. 강릉과 삼척이 각각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그 양을 일부 줄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합병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 김재홍 상임위원

-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주당으로 강릉·삼척 시사·보도가 강릉이 190분이었고 삼척이 170분이었는데 합쳐서 170분, 170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편성비율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편성비율은 전체 16~17%의 자체 편성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약 25%가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25% 이하겠네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사실상 좀 낮아 보입니다. 더구나 경영이 어려운 지역방송사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재원이 덜 들어가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낮춰서 한다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불리할 텐데, 또 하나는 그 지역 문화권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앙에서 보내주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수증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뉴스를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경허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강조하고, 중간점검할 때에도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강릉·삼척MBC 합병 심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앞부분, 이기주 위원님과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비 방송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설명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에도 이 문제가 심사위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방송사업자로서 적절한 사업이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후에 이 부분이 방송 본체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사측에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 방송 분야 사업에 대한 사측의 의지가 확고했고, 이미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등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에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방송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라는 그러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심사위원들에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심사의 변경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들어가지 않지만 지금 지역MBC나 지역민방들이 문화사업, 또는 문화사업과 연관이 없는 예식장을 한다거나 커피숍을 한다거나 임대업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사를 계기로 해서 지역MBC와 지역민방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방송사업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방송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로서 그 사업이 적절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추후에 점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관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관 제2조를 보면 목적사업으로 해서 9개의 고유사업과 9개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의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9개 사업을 보면 첫 번째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두 번째, 광고사업 및 광고의 업무대행, 세 번째, 영화, 음반, 인쇄, 출판, 및 뉴미디어 관련 사업, 또한 공연사업, 이 정도는 저희가 봤을 때 방송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여행 알선 및 관광사업, 그리고 교육, 연수, 직업능력개발 학원 등 사업,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커피 제조, 유통, 프랜차이즈, 인터넷쇼핑, 음식점 사업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정관에?

○ 최성준 위원장

- 정관에 당연히 명기가 되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 방송 사업은' 하는 것이 아주 애매한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수익창출을 위한 정관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수정은 할 수는 없으니까 '정관의 목적사항 몇 호부터 몇 호까지의 사업은' 이렇게 해서 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념도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 이기주 상임위원

- 하여튼 제 취지는..., 위원장님! 그 대안은 제가 보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송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수익원 창출, 그래서 오히려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그것까지도 오히려 제약을 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광고매출 감소 등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원래 '방송과 방송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방송 및 방송관련 사업'을 다 나열하기는 그러니까 정관을 인용해서, 정관의 목적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사업 이외의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보고 드릴 때 제1호~제10호 중에서 몇 개는 방송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또 다시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방송이고 방송이 아니냐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대안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방송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 이렇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나중에 매년 한 번씩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지금 정 국장이 표현한 그 용어에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수익 창출을 위한 방송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하고 뒤의 문구는 그대로 하고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결국 '관련'자 한 자가 느낌을 확 다르게 하네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의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이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권고사항 제3항 중 '비 방송 사업은' 부분을 '방송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은'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4-56-19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공표되었고, 11월 12일 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 11월 14일 규제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안 제3조)입니다. 기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정보통신망법 망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아래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000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7,000만원, 일반 위반행위 5,000만원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를 거쳐 공표·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법 개정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개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56-200~226)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조사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터넷쇼핑몰사업자 중에서 개인정보 누출사업자를 통보해 오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아래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한 31개 사업자입니다. 주요 경과는 지난 5월~6월까지 현장조사가 있었고, 10월 26일~11월 10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 및 처분규정입니다. 플러스마인 등 27개 사업자가 비밀번호 등을 송·수신하면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주)메세지코리아 등 5개 사업자가 이용목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주)ABC마트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시 위탁사업자, 개인정보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등 일부 항목을 누락한 행위는 제27조의2제2항(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주)금상첨화는 필수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엔프라니(주)는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 제23조제2항(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및 제31조제1항(법정대리인의 권리)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처분(안)입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해당 사업자 모두 정확한 누출 시점, 누출경로 파악 등이 어려워 누출원인과 제28조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상공 기업(종업원이 2명 이하이고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차상위 영세기업(종업원 수 50명 미만 및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은 제28조 위반사항이 2개인 경우 과태료 가중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본방안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보호조치)을 위반한 27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애플리스외국어사 등 7개 사업자는 가중기준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고, 또한 감경기준인 과실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코스피아 등 3개 사업자는 제28조 위반행위가 2개이므로 가중사유에 해당하지만 차상위 영세기업임을 감안하여 가중하지 않고, 감경기준인 과실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다하누(주) 등 12개 사업자는 위반사항이 1개이므로 가중하지 않고, 감경기준인 과실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마인 등 5개 사업자는 소상공 기업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

보의 과기)을 위반한 (주)바이와이제이 등 4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1,000만원이나 감경기준인 과실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상공기업인 (주)스네일코리아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2제2항(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을 위반한 (주)ABC마트코리아 등 3개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조항이 없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2항(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을 위반한 (주)금상첨화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1,000만원이나 감경기준인 과실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법정대리인의 권리)을 위반한 엔프라니(주)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용자 11명의 매출액이 약 8만원으로 처분의 실효성이 없어 시정조치 명령만 내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반 사업자별 처분 내역의 상세 내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을 오늘 의결하면 처분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번에 조사한 대상기업들이 이름은 생소하지만 <붙임>의 사업자 현황을 보니까 매출액이나 직원수로 보나 생각보다 규모가 큰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 누출건수가 많은 사업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든 시정명령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지 규모가 큰 이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혹시 또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도 보니까 매출규모가 3,996억 8,200만원, 2,838억 2,900만원, 수천 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과태료 500만원, 1,000만원이 제재효과가 있을지, 재발방지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정액 과태료 제재는 이런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규모의 기업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출 대비 과태료, 과징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도둑질이 많지만 교통사고가 많지만 다 처벌할 수 없고 인지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인데, 그러나 개인정보 누출의 경우 엄청난 사태로 번질 위험성이 큰 업체들,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업체들이 어디지요? 저는 포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지칭하지 않겠지만 다 아실만한 포털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그것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매출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감이 있지요. 작은 영세업체들은 경찰에 인지됐기 때문에 수사했고 우리에게 통보된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할 일은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포털 중심으로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어느 기업을 봐 주거나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조직, 큰 기업일수록 그런 대비는 잘하고 있다고 짐작되지만 알 수 없는 것이고 카드사, 또 큰 이통사들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의도적이건 실수건 과실이건 간에 그것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대비해 놓지 않으면 사고가 터졌을 때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 큰 데일수록 완벽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의 예로 포털을 드셨는데 앞으로 포털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또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조금 보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정리된 5페이지와 붙임1의 개인정보 누출사업자 현황, 앞서 이기주 위원님이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처벌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피해규모라고 봅니다. 피해규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결국은 개인정보의 누출규모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산정기준 금액이나 실제로 부과한 것을 보면 200 몇 건 누출한 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1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사업자가 감경돼서 500만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얻은 이득, 개인정보 누출 규모 등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들을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앞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출액이나 말씀하신 누출건수 등이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다량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중에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또는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조사도 하지만 연초에 기획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량 보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만, 종전에는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누출원인과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그 시행 이후에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삼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태료에 개인정보 누출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과태료 관련된 부과기준을 검토해서 그런 누출현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태료를 반드시 상향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출액 규모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액 규모와 누출건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금액도 지금보다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지금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 또 저희들이 실행해야 할 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관한 건 (2014-56-22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SK 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가 '14년 10월 31일~11월 2일 기간 중 단말기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사 대상 및 주요 경과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0월 31일(금)~11월 2일(3일간) 기간 중 발생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44개 유통점입니다. 44개 유통점의 내용은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를 받은 유통점이 34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 실적 상위 유통점(10개) 이렇게 해서 44개를 선정하게 되었고, 총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대리점 2개, 대리점과 판매점을 겸업하는 곳이 한 군데, 그다음에 이통3사 겸업 판매점이 41개였습니다. 주요경과는 11월 3일~11월 20일까지 총 44개 유통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대상 유통점 중 3개점이 현재까지 휴업하고 있어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계속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지원금 과다지급입니다. 조사대상 기간 중 44개 유통점에서 모집한 전체 1,298명의 판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가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 2,000원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8만 8,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아이폰이 위반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박스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장려금 상향·시달 관련해서 이통3사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라고도 함)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일반적으로 2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통3사는 10월 31일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 단말기에 대하여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하여 11월 1일에 아이폰6(16G) 모델에 대해 최고 55만원 수준까지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건당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통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의 경쟁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망 관계자에 의하면 판매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이는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이통3사가 아이폰6(16G)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 변동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통3사는 '이러한 장려금의 상향 조정이 경쟁사의 판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아래 박스의 진술들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법성 판단입니다.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과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법 제3조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동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통3사가 평소와 다르게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행위는 유통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하는 차별적인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통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재 방안입니다. 먼저 이통3사에 대한 제재입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입니다.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4조(시정명령)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그다음에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통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

과 여부는 사업자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3사 임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입니다.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토록 지시, 유도한 이통3사 및 각사 장려금과 관련된 이동통신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유통점에 대한 제재입니다. 시정명령 및 과태료입니다. 34개 유통점에 대하여 동법 제14조제2항, 그리고 동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여부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우선 3개 법인과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진술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형사고발은 이통3사 기업과 임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임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도….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말고 별도로 형사고발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언론들이 많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른바 통신대란,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거래를 제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통법에 형사고발이 처음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짧았던 것 같고, 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만족할 만한 현장조사 자료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정한 시간에

부동산의 뗏다방처럼 영업하다가 물의가 빚어지니까 문 닫고 사라진 대리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기업과 책임 영업 임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하는 것은 단통법 입법 취지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장, 현장에서 위법행위의 중요한 행위자인 몇 개 대리점에 대한 형사고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나중에 법 개정에 추가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형사고발을 기업에 대해 하는 것은 동의하고 임원에 대해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자신이 서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특정 간부를 지칭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는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검찰에 그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수사요청입니다. 형사고발은... 저는 위법행위, 불법행위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원 개개인의 회사 내에서의 임무와 역할,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원, 간부를 특정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 근거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는 처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임원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선에서 검찰, 사직 당국에 넘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안건 중에 4페이지 이통3사의 장려금 변동 추이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유통망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보니까 평소에 대당 20여만원 하던 판매장려금이 3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동추이를 보면 이분 말에 의하면 26만원, 27만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용자정책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문제는, 11월 1일 10시에 30만원, 30만 2,000원, 2개 사업자가 장려금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의 장려금 변동 추이는 실제로 이통3사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낸 전수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이용자정책국에서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만 시간대별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전수를 받아왔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11월 1일이 토요일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개사가 30만원 내지 30만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표>를 보면 나타나고, 토요일 저녁시간 때 피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말기 유통법 제정 시행 이후 첫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저의 추정으로 보면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적용을 받던 시절과 유사한 패턴으로 장려금이 내려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30만원을 처음에 내려 보낸 것도 그렇고, 그 뒤에 점차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행태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 이런 행태들이 저는 처음에 누가 얼마를 썼고 이런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따라가는 행태, 계속 올라가는 행태 이것이 아주 심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였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형사고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 달라지긴 했지만 단말기 보조금이 됐든 단말기 지원금이 됐든,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 이통3사에 대해 법인과 함께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것이 최초의 케이스 같습니다. 이 형사고발과 관련해서, 이용자정책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런 형사고발까지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조사해 봤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단통법에서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단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적었지만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대리점에서 이통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서에 있지만 다른 것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기 때문에 결국 1대당 20만원, 30만원 기본경비를 주던 것을 50만원을 준다고 할 때에는, 결국 더 쓸 수 있는 경비를 주는 것이 단통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도록 이통사가 지시, 유도한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은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그런 이용자 차별을 하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개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을 벌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사실 조사기간이 부족하다거나 조사인력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방안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통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어서,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제자리에 잡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단통법을 만들었는데 법인에 대해 형사고 발해서 벌금 얼마 매긴다는 것은 사실 제재의 효과가 너무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양벌규정에 따라 임원까지도 형사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이통3사나 본사나 아니면 수도권본부에서 장려금 시달이 내려간 것을 확보해서 이렇게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통사 내부의 의사결정, 이러한 장려금을 상향해서 지급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나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 봤나….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조사했던 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통3사를 불러서 이런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는데, 일단 3사 모두 '따라갔다'는 표현입니다만 결국은 불법을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통사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통3사가 불법을 저질렀다, 따라갔다는 표현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일종의 조사의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나 주체까지는 조사를 안 했거나 못 했다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의 한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저희가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런 정도의 판단에 대해 물으면 상식적으로 '몰랐다', '누구까지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다시 4페이지의 변경 추이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 번의 의사결정을 이통3사 공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또 새로운 장려금 추가 지급,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저도 궁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장려금 관련 이동통신 영업담당 임원' 이렇게 어느 자연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게 된 판단근거가 시시각각으로 시간 단위별로 장려금 추가 지급규모를 내려 보내는 그 의사결정을..., 그날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저녁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동통신 영업담당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몇 만개 되는 대리점에 몇 십 만원씩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설사 부장이, 팀장이, 차장이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임원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끝으로 형사고발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는 피해자들의 거주지를 고려해서 서울중앙지검에 할 예정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 표현은 '장려금과 관련된 이동통신 영업담당 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지금 쪽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이동통신사에서 장려금을 결정하는데 소위 책임이 있는 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부가적으로 더...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 사무처가 현장조사한 것이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언론들이, 주로 신문들이 '통신시장 대란', '아이폰6 대란'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물의에 비해 조사 내용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흘 동안만 했고 그 이후로는 과열된 시장이 가라앉은 것 같고, 총 44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리점이 2개였고 나머지는 대개 이통사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이통

사의 것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통사가 책임 있게 관리·관장하는 유통점은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2개를 가지고 이통사를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통사가 통신시장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회사별로 임원들의 역할과 시장에서의 실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없고 그런 것은 그냥 범법 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하고, 인과관계 책임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리점에 대한 책임 문제, 형사고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유통점은 다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매출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중에는 큰 손들이 있습니다. 시장질서를 흔드는 것도 큰 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중에 연간 매출이 제일 큰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수천 억, 수백 억..., 그것에 대해 모르십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르게 표현하면, 많은 유통점을 거느리고 있는 업자들이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많이 갖고 있다고 파악된 범위 내에서, 보통 유통점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몇 십 개씩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몇 십 개씩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바로 그런 근거인데 그것을 중간 통신사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대리점과 판매점을 열 몇 개, 수십 개씩 거느리면서 영업하는 큰손들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보고도 한 것 같은데 기

억으로 연간 수천 억원의 매출액을 가진 그런 큰손들이 있습니다. 시장교란에 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속 나갔더니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사해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수사권이 없고, 우리에게서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수의 판매점·유통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연간 수백 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시장대란 때마다 잠시 등장했다가 이렇게 해먹고 도망치는 그런 대리점들을 형사고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거쳐, 현재 이동통신사, 그다음에 제조사, 양벌규정에 따라 그 임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나아가서 영세한 대리점, 판매점 이외에 그와 같이 기업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유통점을 거느리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불법을 저지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이통3사가 아이폰6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 제재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들로 하여금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도록 지시·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지원금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업체가 먼저 시작했다,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는 등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지켜지지도 않을 재발방지 약속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동통신3사 면담조서를 보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발생한 이른바 ‘아식스 대란’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동통신사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금 상한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단말기 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제정의 취지대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지급되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고 지원금 혜택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보조금 중심의 가입자 뺏기 경쟁에서 요금 등 서비스 경쟁이 주가 되는 건강한 이동통신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이용자들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에 큰 차질을 초래한 이번 아

식스 대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통3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사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와 정부와 이동통신사, 이용자인 국민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과징금, 즉 돈으로 책임을 대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을 조장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통사들의 기업문화와 영업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조사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보도된 것에 비추어 판매자료 분석수나 또는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의 경우에는 보도에서 다 보셨듯이 저희가 일요일 날 바로 조치 및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주말에 많은 초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직 개통을 못한 건수에 대해 월요일부터 취소를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취소가 이루어진 것은 초과지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악도 어려워서 그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실제 개통이 된 것에 한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볼 것은 혹시 조사한 44개 유통점 중에 온라인 유통점이 있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여쭙 보는 이유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또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런 온라인 유통점에서 위법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온라인 유통점도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온라인 유통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정보를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조사가 된 영업 유통점들은 전부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점으로 승낙을 받은 업체들이지요?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매장마다 보니까 일부는 위반을 한 곳이 있고 일부는 조사를 했는데 위반한 것이 한 건도 없는 데가 열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 곳은, 여기에는 정상적인 리베이트만 내려갔지 추가적인 리베이트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 리베이트는 가입자를 유치할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입자를 하나도 유치 안 했다면 모르지만 유치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주고 추가로 주는 것도 동일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공시된 지원금만 지급했을 경우도 있고 2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 건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저는 만약에 리베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도 하지 않았다면 리베이트를 많이 준 곳은 분명히 이통사 측에서 이것은 위법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하는데 좀 더 강한...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드린 <표>에 있는 금액은 어느 판매점이나 다 공지된 그런 리베이트 수준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통3사에 대한 면담조서를 보니까 팀장이나 상무나 사장이나 이분들의 내용이 뭔가 자기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것이 불법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네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아직도 이 단통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나친 규제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단통법은 이미 입법이 됐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에서 그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위를 본인들이 했거나 아

니면 조장을 했거나 그 부분은 물론 나중에 사무국에서 판단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신대란',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 진정이 되는가 했는데 아이폰6가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되는 것을 계기로 또 다시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 나타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형사고발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도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디까지나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규범인데 그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경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임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으면 한다는 판단인데 만약 사측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을 하게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은 법인에게 형사벌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법인에 대한 형사벌, 개인에 대한 형사벌 따로 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는 지금 위원회 실무진에서 올린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약판매했다가 단속이 들어가니까 취소한, 철회한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파악해야 진짜 불법행위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불가능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사업자들이 정확히 협조해 주면 가능한데 저희로서는 일단 이통사에 개통이 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 김재홍 상임위원

- 예약만 하는 것은….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약은 판매점과 가입자 간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지 아직 이통사에서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사대상 가입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많은 수가 예약을 했고 그 뒤에 철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 언론보도였기 때문에 우리 조사내용이 통신시장 대란, 아이폰6 대란이라는 표현에는 조금 못 미친다는 느낌을 갖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취소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통사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이통사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형사고발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요. 언론보도의 수위에 대해 실제로 현장조사 해 보니까 느낌이 맞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실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줄을 섰던 일부 매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지금껏 조사해 본 바로는 기간도 짧았지만 규모나 참여했던 판매점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불만제기가 아니었느냐는 이야기가 소비자, 이용자, 젊은 세대층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폰의 가격경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도 외국제 폰을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이 국제시장보다 훨씬 더 비싼 국내산 폰을 쓰고 있다,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원금 공시를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던 제조업체가 분리공시가 무산됐기 때문에, 다른 외국산 폰을 싸게 구입하려는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합한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 굉장히 과도하게 불만제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론계에도 있고 이용자들, 더군다나 예약판매했다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휴대폰을 싸게 사려고 했다가 취소된 이용자들의 불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실제 상황에 걸맞은 조사와 또 조사결과에 걸맞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취소한 사례를 추가적으로라도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조사능력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약했다가 취소한 것까지 조사하고, 또 지금 일부 판매점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조사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를 나갔을 때 계약서를 확인하면 계약서 자체는 공시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작성되어 있고 그 계약서를 확보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밀스럽게 적어놓은 그것을 찾아내야만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됐다든지, 페이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부라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여러 가지 조사의 한계, 또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약했다 취소한 것의 파악 문제 등은 저희들의 조사 한계로서 참 버거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동통신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인해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갖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에서 수사가 된다면 저희가 한계 때문에 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더 폭넓게 조사가 되어서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한다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신속히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진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논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용자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조사 권한의 제약, 인력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단말기 보조금 조사에 비해 이번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გადა 지급, 불법 지급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체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3페이지에 <표>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려금 변동 추이, 이 2개만 봐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을 우려하게 했던, 걱정을 끼쳤던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해서 엄벌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전산처리를 미처 못 해서 그랬을 뿐이지 종이로 계약서까지 쓴 것, 계약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문제는 우리의 가장 초동 조치 내지는 선제적 조치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고 의견을 말씀 드리면, 11월 1일 우리가 8월 말부터 미래부와 합동으로 TF 반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시장모니터링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1일 TF 직원들이 실제로 취약지점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장려금을 확대되는 것을 언제 파악을 했습니까? 11월 1일 오후 2시입니까? 제 기억으로 오후 2시에 이통3사 임원 회의를...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오후 3시에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3시에 회의하고 물론 전달이 되고 회의 내용에 따라 협조해 주고 안 해 주고 차이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시장이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과열되는 것 자체를 모니터링을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모니터링은 저희가 실태점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하 협회를 통해서 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가지고는 금방금방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각사들로부터, 전부 다 대리점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각사들로부터 듣는 자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조사해서 조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11월 1일, 11월 2일 이 주말에는 종전과는 달리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모두 다 전산망이 열려 있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전산망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KTOA에서 전산망을 관리하는 것은 번호이동입니다. 이번 위반행위들의 대부분은 기변과 신규가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각사가 취급해서 통계를 내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통해 특히 번호이동 건수에서는 많이 올라간 것은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에 대해 주도사업자를 그동안은 가능하면 찾아서 이 대란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3페이지 <표>를 보니까 다 이통3사가 비슷한 시기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상황을 주도한 사업자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주도사업자 관련해서는 지난 제2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서 주도사업자를, 지금 보셨다시피 <표>에 있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주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이통3사들과 방통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단통법 시행 전까지 적용해서 처벌했었습니다. 단독 영업정지도 주고 했는데, 단통법이 시행된 후에도 주도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운영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틀간의 조사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사 대상기간이 두 달 정도 될 경우에 3사가 합의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조사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느 사업자가 몇 시간 더 빨리 많은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뒤따라서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비슷한 수준 또는 그것을 초과하는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4페이지에 있는 <표>를 가지고 어디가 주도사업자다, 아니라고 가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5페이지 면담조서에 있는 것처럼 '따라간 측면이 있다', '다른 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도사업자가 아니라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이동통신사가 먼저 하니까, 따라갔으니까 나는 조금 더 관대하게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이제 통용될 수 없는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갔더라도 이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다 같이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고발은 이동통신3사는 당연히 특징이 되고, 지금 논의된 것처럼 각사 장려금과 관련된 이동통신 영업담당 임원은 특정 없이 이런 표현으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다 이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장려금 결정에 책임

있는 임원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저희로서는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장려금 결정에 책임 있는 임원을 수사기관에서 좀 더 조사해서 밝혀 주기를 고발에 담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CEO까지 이런 것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 조사된 상황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렇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는 CEO도 이 부분의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견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오늘 의결할 부분 이동통신3사에 대한 고발 및 그 장려금과 관련된 영업담당 임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다 이의는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이 안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오 국장께서, 주도사업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2기 위원회 때 했는데 저희가 단통법 이후에 앞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고 할 때,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먼저 불법지원금을 쓰는 사업자도 당연히 잘못이지만 따라 가는 행태도 이 단통법 체제 하에서는 정말 근절을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따라가려는 사업자가 안 따라가고 ‘다른 사업자가 과도한 불법지원금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한다든지... 이것이 자꾸 단시간 내 확대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불법지원금을 딱 썼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포착 내지는 파악이 돼서 다른 사업자는 안 따라가게 하는 이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 논의를 할 때 그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할 때 관련 첨부서류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사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첨부해서 고발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간단히 말씀 드리면 각 사별로 대리점에 내린 장려금 지급의 시간대별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리점, 판매점의 관계자 진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형사고발 내용에 보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토록 지시, 유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리점'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일반적인 유통점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다른 유통점은 아니고 이통사가 관장하는 대리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사한 대리점은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판매점에서 하는 것은 형사고발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닙니다. 대리점이 결국에는 또 한 단계 아래로 판매점을 통해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통3사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판매점들이 대다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라고 고발장을 쓰는 것이 다른 판매점의 불법행위는 제외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법 제9조제3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법에 협정체결과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9조제3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 입법취지도 제가 보기에 이통3사가, 직접 관리책임이 있는 대리점이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형사고발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의 유통점들이 하는 행위는...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그것도 다 고발대상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유통점으로 돈을 내려 보내는 곳이 대리점인데, 그 돈을 이통사가 대리점에 주면 대리점에

서 유통점에 주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대리점을 거쳐 유통점으로 갔기 때문에, 대리점으로 돈을 준 것은 결국 유통점이 그렇게 차별하도록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유통점이 다른 대리점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대리점에 유통점이 다 붙어 있습니다.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단말기 유통법은 판매점에 대해 사전승낙을 이통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復)대리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행위 자체를 사전에 승낙해 주고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만약에 위아래 관계로 그림을 그리면 판매점이 이통사에 직접 붙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판매점은 다 대리점에 붙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리점을 통하지 않은 자유로운 판매점들도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없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어떻게 모집해도 대리점에 가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사된 위반건수, 540건 전부 다 고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회의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0분 폐회 】**